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7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【행복나눔과】

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행복나눔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무료급식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에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’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7조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0조 자원봉사자 등록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수정 하였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6. 1일부터 6.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6. 29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관련 조례 개정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3091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7. 7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행복나눔과장)

1. 개정이유

-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무료급식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

- 노인무료급식소 목적 수정(안 제1조)
-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(안 제7조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등 수정(안 전반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6. 1.~2023. 6. 2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3)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” 를 “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” 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 “노인무료급식소” 라 함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」에 의한” 을 “ “노인무료급식소” 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 “운영자” 라 함은” 을 “ “운영자” 란” 으로, “자로 한다” 를 “자를 말한다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 “종사자” 라 함은” 을 “ “종사자” 란” 으로, “자(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)를” 을 “사람(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)을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“또한” 을 “다만,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” 를 “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 보조금” 을 “따른 지원” 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” 을 “제8조에 따라 지원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의한” 을 “따른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무료급식소”라 함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」에 의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운영자”라 함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.</p> <p>3. “종사자”라 함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(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)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계획수립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</p>	<p>제1조(목적) ---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소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“노인무료급식소”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-----</p> <p>2. “운영자”란 ----- 자를 말한다.</p> <p>3. “종사자”란 ----- 사람(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)을 --.</p> <p>제3조(계획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</p>

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) ① 노인무료급식소는 주 3회 이상 운영한다. 또한 휴한기, 휴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운영자의 책무) 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 다만,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7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①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

-----.

제4조(운영) ① -----
----- . 다만, -----
----- 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운영자의 책무) ① -----
-----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 -----
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.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구 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8조(예산지원)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9조(보조금의 환수)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제8조(예산지원) ① -----

-----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----- 따른 지원 -----

-----.

제9조(보조금의 환수) ----- 제8조에 따라 지원을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따른 -----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노인복지법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

제3조(복지관의 사업)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사례관리 기능 : 사례발굴,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
2. 서비스제공 기능 : 가족기능강화, 지역사회보호,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
3. 지역조직화 기능 : 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·관리 사업
4.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 등